

전략연구 2016-25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연구

성태규 · 장창석 · 김문광



발 간 사

노동권은 자유로운 인간의 물질 토대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권적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이 청소년이다. 중고교 학생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여, 사회적응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다. 이로 인해 노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노동인권문제는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인권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절대적 빈곤 탈피, 용돈 마련 등의 이유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취약한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의식이 갖춰지지 못했기에 노동인에 대해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37개 특성화고 모두를 대상으로 충남 청소년의 노동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충남 청소년의 노동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전수조사에 협조해 주신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문해 주신 김문광, 이진숙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청소년 노동인권의 발생은 크게 법률적 차원의 문제, 인식적 차원의 문제,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결국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 인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인권침해를 허용할 수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률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해도 지역적 차원, 인간적 친분 등으로 인해 묵인 아래 법률적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법률적 제도를 모르고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인식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제도적 차원은 준법과 노동인식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노동인권을 무시하게 되거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과 사후 감독 등을 의미한다. 이런 세 차원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청소년 노동인권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차원의 보완책을 대상영역별로 제시한다.

충남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학교내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 노동인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충남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적 기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법률개정도 요구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청소년의 야간노동과 휴일 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제4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에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취업률로 특성화고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특성화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의 적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 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당위법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교육을 통해 “노동”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청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필수교육인 위생교육 안에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충남 교육청의 시책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고찰	2
3. 연구범위.....	3
4. 분석틀.....	4
5. 연구방법.....	6
6. 연구경과.....	6
1) 연구의 초점과 범위 설정.....	6
2) 설문조사지 작성.....	7
3) 설문조사.....	7
4) 인터뷰.....	7
5) 조사 해석 및 정책대안 도출.....	7
제2장 이론적 고찰	9
1. 인권과 노동권.....	9
2. 청소년 노동인권.....	10
3.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규범.....	11
1) 근로 계약 기간.....	12
2) 근로 계약서 작성.....	12
3) 임금과 노동 시간.....	12
4) 사회 보험 적용.....	13
5) 4인 이하 사업장.....	13
제3장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4
1. 설문조사.....	14
1) 조사 개요.....	14
2) 조사 결과.....	14
2. 심층 인터뷰 조사.....	53
1) 조사 개요.....	53
2) 청소년 노동 인권침해 사례.....	53
3) 현장학습 문제점.....	56
4) 노동 인권 교육 문제점.....	58
제4장 정책제언	59
1.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사항.....	60
2. 현장실습 개선사항.....	62
3. 노동 인권 교육 개선사항.....	63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7
<참고자료 1> 해외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68
<참고자료 2> 설문지.....	70

표 목 차

[표 1] 청소년·연소자·미성년자 구분 기준.....	3
[표 2] 나이에 따른 제한 규정.....	3
[표 3] 자문회의 경과.....	6
[표 4]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항.....	11
[표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명시 항목.....	12
[표 6] ‘응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15
[표 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인식’	16
[표 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의욕’	17
[표 9]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의 공정한 대가’	18
[표 10]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	19
[표 11]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에 대한 귀천의식’	20
[표 12]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	21
[표 13]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윤리’	22
[표 14]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	24
[표 15]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생계 유지’	25
[표 16]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자아실현’	26
[표 1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전문성 계발’	27
[표 1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명예 획득’	28
[표 19]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	29
[표 20]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30
[표 21]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	31
[표 22]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적성에 맞을 것’	32
[표 23]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일에 대한 만족도’	33
[표 24]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보상(임금) 수준’	34
[표 25]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자아실현’	35
[표 26]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재미 있을 것’	36
[표 2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장래성’	37
[표 2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사내 인간관계’	38
[표 29]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40
[표 30]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업종.....	41
[표 31] 아르바이트의 목적.....	42
[표 32]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경험.....	51
[표 33] 노동 인권교육 견해.....	52



그림 목 차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의 틀.....	5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체계.....	8
[그림 3] 거주 지역.....	15
[그림 4]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9
[그림 5] 아르바이트의 목적.....	47
[그림 6] 22시 이후 근무 경험.....	48
[그림 7] 급여 형태와 급여 금액.....	49

제 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노동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업종이 생겨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성인들은 이들을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나” 라고 무시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에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못해서 학업에만 몰두할 형편이 못되는 학생도 많이 있다.

학업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떤 동기에서든 노동을 하는 청소년은 노동하는 동안 노동현장에서의 기본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사회적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노동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권적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중의 하나는 청소년이다.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보호과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고교 학생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여, 사회적응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노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용돈을 마련하려는 등등의 이유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취약한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노동인권 침

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노동인권문제는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인권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각종 노동인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은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데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노동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인권에 관해서는 기존에 다수 연구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충남의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로는 충청남도(2015)의 연구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을 연구하였다.

청소년 인권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는 정아름(2010), 박창남(2014)의 연구가 있으며, 실증적 연구를 성북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연구한 이수정·이주환(2015)의 연구가 있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도 정진후(2013), 최민(2015), 최수정(201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충남 비정규직 지원센터(2011), (2012), (2013), (2014)도 2011년~2014년에 걸쳐 매년 천안지역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였다. 한편 전국단위에서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최민(2015)에 의해 연구되었다.

기존연구에서 최민(2015)은 특성화고 관련 청소년 노동인권에 실태조사를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하였지만, 충남지역에서는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충남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2011), (2012), (2013), (2014)연구는 충남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조사하였지만, 천안지역에 국한된 실태조사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 연구가 지녔던 제한된 지역조사를 넘어 충남 전체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조사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회에 걸친 자문을 통해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사각지대를 찾았다.

3. 연구범위

우리나라의 청소년·연소자·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용어는 가리키는 연령대가 다르며, 사안에 따라 나이제한 규정을 자세히 나눠놓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1] 청소년·연소자·미성년자 구분 기준

분류	내용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해서, 여러 유해 업소 출입과 술, 담배 같은 유해 식품 판매 금지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연소자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여, 성인 노동자와 다르게 여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미성년자	민법은 만 20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 규정하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반드시 부모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표 2] 나이에 따른 제한 규정

분류	내용
만 13세 미만	-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를 빼고는 절대 일을 시켜서는 안 됨(시행령 제35조)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일을 시켜선 안 되지만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제64조)
만 18세 미만	- 부모의 동의서 필요. 이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증명서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갖춰두어야 함(제66조) - 노동 시간은 하루 7시간~주40시간 이하. 다만, 당사자 합의로 하루 1시간, 주 6시간 까지 연장 가능(제69조) - 야간 노동(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 노동 금지.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제70조) -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과 갭내 작업 금지(제65조, 제72조)
만 20세 미만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제67조). 다만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 노동부 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제68조). 이는 사용자가 부모에게 지급 했다 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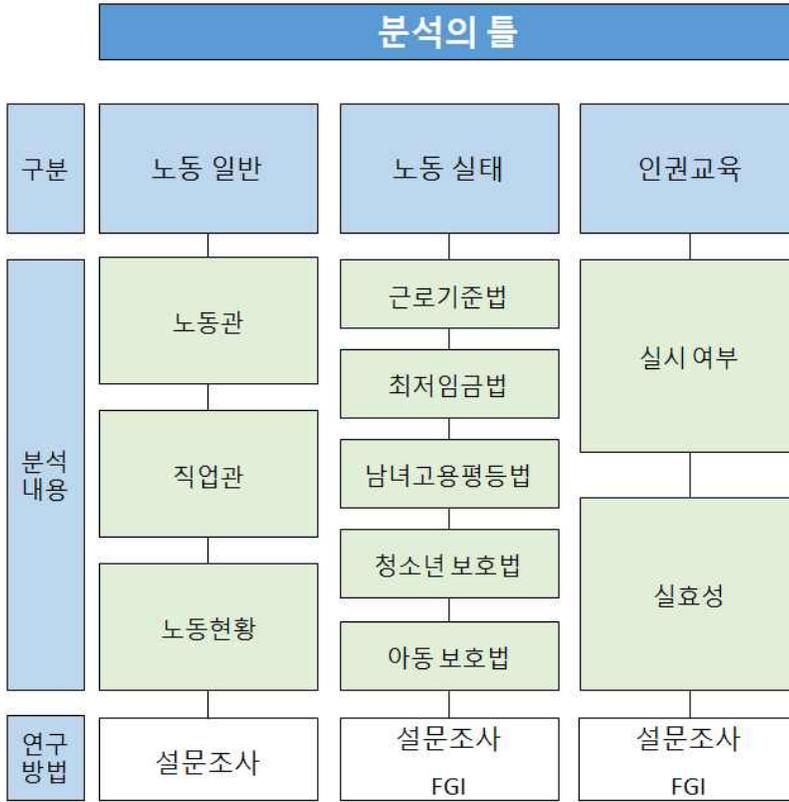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되지만, 지역 청소년 중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들은 현장학습을 통해 많은 노동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재학중인 청소년의 현장실습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2016년 현재 충남에는 37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이 학교의 3학년은 매년 하반기에 충남 지역 내외의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학교이외의 현장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명목상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의 평가를 위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인권감수성이 낮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많은 노동인권침해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의 현장실습의 노동인권 실태와 더불어 충남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4.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①노동일반, ②노동실태, ③인권교육의 분야를 설정하였다. ①노동일반에서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노동사회의 이미지, 직업관, 노동관을 조사하였다. ②노동실태 항목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법률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에서 규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규정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③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노동인권의 실효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의 틀

5.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충남의 전체 37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생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 학교별로는 학년별로 1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개별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자 3개 특성화고교의 학생과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특성화고교의 현장실습 담당 교사와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와의 집단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6. 연구경과

본 연구는 노동인권 당사자, 관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당사자와의 최대한 접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조사인터뷰 조사 결과의 해석 및 문제점 도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전문가 등과도 워크숍도 병행하였다.

1) 연구의 초점과 범위 설정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찾고,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연구대상을 찾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와 4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3] 자문회의 경과

일자	자문위원	자문내용
4.4	이진숙	연구 초점
4.12	김민호	연구 초점, 연구범위
4.15	김문광	현장실습 관련 노동인권
4.18	이진숙, 김민호, 김문광	연구범위, 연구초점 결정

2) 설문조사지 작성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을 설정하였다.

3)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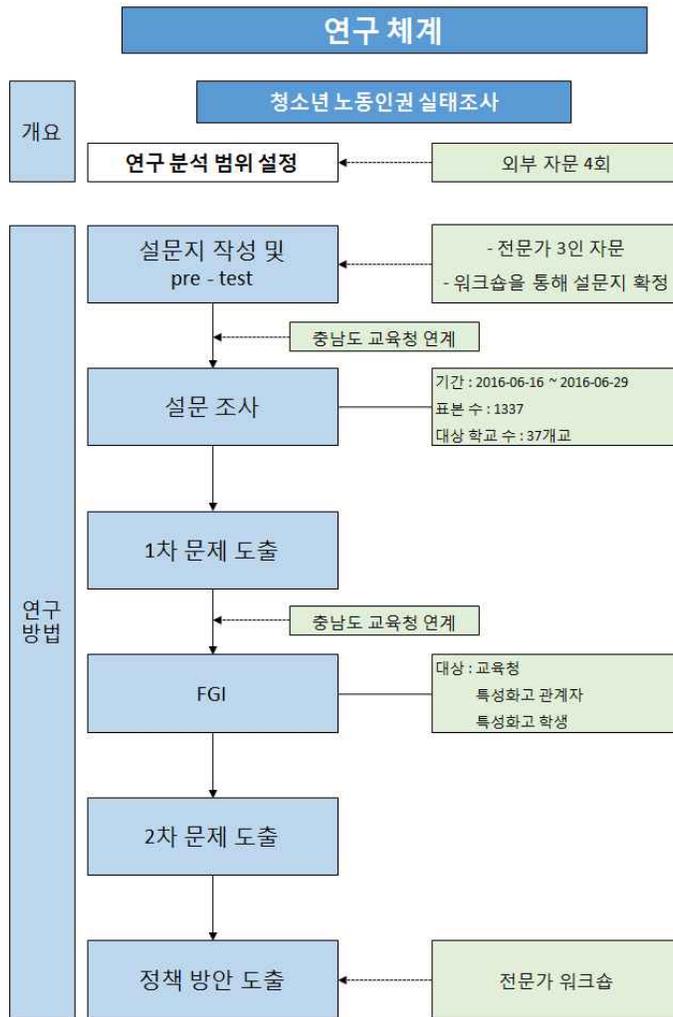
충남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goo.gl/wg7juX)를 통해 충남지역 특성화고 37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16일부터 동년 6월 29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인터뷰

2016년 10월 4일 특성화고 학생 3명, 논산공고·부여정보고·공주마이스터고·천안공고·삼교고 교사 5명,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자 1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조사 해석 및 정책대안 도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해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2016년 11월 17일 충남교육청 관계자 1명, 충남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임대표(노무사) 1명,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관계자 1명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¹⁾

1. 인권과 노동권

인권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값진 삶을 누릴 기회를 얻으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은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이주민이든, 어린이든, 심지어 동물이나 지구까지도 모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에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하면서 비준한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규약)」의 제6조는 근로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권은 이러한 보편적 인권이 그 바탕을 이룬다. 노동자 또한 인류의 한 구성원이니 노동자의 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와 집단적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3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 노동기구(ILO)가 1949년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1957년에는 강제 노동 금지, 그 이듬해에는 고용과 직업의 차별 금지 협약을 잇달아 채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흔히 ‘노동권’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사회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²⁾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1) 차남호((2013)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2005)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 3권’ 이라 하고, 노동권과 노동 3권을 합쳐 ‘노동 기본권’ 이라 한다. 여기서 노동권이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권리’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갖춰야 하는 국가의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의 권리’ 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노동자에게만은 따로 노동 기본권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이 생존의 물질 기반이 되기 때문에, 노동권리의 침해는 곧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노동 기본권을 명시한 것은 노동권 보장이 국민의 생존문제이고, 노동권 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청소년 노동인권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여야 할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을 따로 언급한다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인권은 보장되어야 할 인권주체인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서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아직 성인의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인권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 를 의미한다면,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갖는 기본권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의 기본권 권리에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은 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아름, 2013)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이 갖는 기본적 권리 중에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과거 서구의 시민 혁명기에 얻은 자유권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적 자유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자,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존적 권리가 취약하게 되어, 이들 약자에 대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권리로 생존권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다.

생존권에는 교육권과 더불어 노동 삼권이 포함된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의무(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제33조) 등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타 제34조에서는 사회보장, 제35조에서는 환경권,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육·국민보건 등 개별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의미를 우리 헌법 제32조~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권리를 포함하고자 한다. [표 4]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항이다.

[표 4]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항

구분	헌법 조항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3.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주요 규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청소년 노동인권의 규범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최저 임금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산업 안전 보건법, 남녀 고용 평등법,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 실습 관련 법률로는 산업 교육 진흥법과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이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계약 기간

모든 계약에는 ‘계약 기간’ 이 들어가는데 근로 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장 실습기간 동안만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면 사용자는 실습이 끝난 뒤 실습생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현장 실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고용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취업 공고를 정규직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 계약을 맺어야 고용이 보장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당 해고가 돼서 법률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명시 항목

내 용
임금, 소정 노동시간, 주 1일 이상의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가·교대 근무,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 기간·지급 시기·승급, 가족 수당 계산·지급 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최저 임금, 식비·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노동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같은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노동자 전체에 적용 될 사항, 기속사가 있는 경우 기속사 규칙

근무 조건이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 임금과 노동 시간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하한선을 규정해 놓아, 이것이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다.

임금지급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급이나 월급은 가능하나 두 달에 한번 씩 준다거나, 분기별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그 회사 제품으로 주거나, 청소년의 부모에게 주거나, 임금의 일부를 적립금 따위의 명목으로 떼고 주는 것 역시 위법 행위이다.

노동 시간의 경우 청소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 노동과 휴일 노동도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면 하루 1시간, 주 6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사회 보험 적용

산재 보험은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며, 고용 보험은 월 소정 노동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 보험의 경우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해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5) 4인 이하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연차·생리 휴가의 경우도 의무적이지 않다. 노동시간도 준수 의무가 없으나 청소년은 1일 7시간~주 40시간 규정이 유효하며, 휴업 수당의 경우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산 임금도 마찬가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3장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노동인권 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노동에 대한 견해를 총 7문항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는 총 6문항을 통해 조사보았다. 또한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를 총 7문항을 통해 분석하였고, ‘노동자’ 하면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업종,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경험,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보았다.

아울러 평균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으며, 일부 분석은 학년별·성별·학교 유형별로 교차분석을 통해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 결과

(1) 응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는 충남지역 특성화고 전체 37개고를 대상으로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goo.gl/wg7juX)를 통해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 특성화고의 각 학년당 1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전체 설문대상 중 고등학교 1학년은 429명(32%), 2학년은 443명(33%), 3학년은 465명(3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는 649명(49%), 남자는 688명(51%)이 응답하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677명(51%),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282명(21%),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12명(16%), 농업계열 고등학교는 134명(10%), 종합고등학교는 32명(2%)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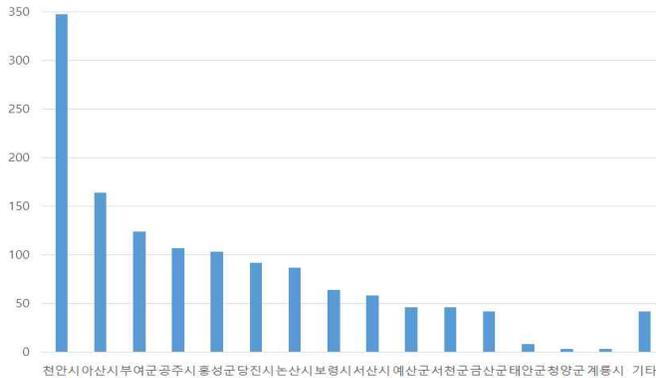
[표 6] '응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합계		1,337	100%
학년	재학생 1학년	429	32%
	재학생 2학년	443	33%
	재학생 3학년	465	35%
성별	남	649	51%
	여	688	49%
학교유형	공업계열특성화고	282	21%
	상업계열 특성화고	677	51%
	농업계열 특성화고	134	10%
	마이스터고	212	16%
	종합고	32	2%

주) 비율은 학년·성별·학교유형별 합을 100%로 함

(2) 거주 지역



[그림 3] 거주 지역

전체 설문대상 중 천안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348명(26%)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64명(12.3%), 부여군 124명(9.2%) 공주시 107명(8%)순이었다. 기타 지역으로는 군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이 있었다.

(3) 노동과 직업에 대한 견해

①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인식’

노동에 대한 인식(“노동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은 평균 2.89로 노동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이 560명(41.9%)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보았을 때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1학년(3.01), 2학년(2.93), 3학년(2.76) 순으로 노동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성별은 여자(2.98)가 남자(2.82)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종합고(3.03), 상업계열 특성화고(2.94), 농업계열 특성화고와 공업계열 특성화고(2.84), 마이스터고(2.83)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인식’

(단위 : 명, %)

		노동인식(“노동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전체		103 (7.70%)	339 (25.36%)	560 (41.88%)	266 (19.90%)	69 (5.16%)	1,337 (100%)	2.89
학년	재학생 1학년	32 (7.4%)	88 (20.5%)	185 (43.0%)	94 (21.9%)	31 (7.2%)	430 (100%)	3.01
	재학생 2학년	37 (8.4%)	114 (25.7%)	165 (37.2%)	99 (22.3%)	28 (6.3%)	443 (100%)	2.93
	재학생 3학년	34 (7.3%)	137 (29.5%)	209 (45.0%)	73 (15.7%)	11 (2.4%)	464 (100%)	2.76
성별	남	81 (11.8%)	171 (24.9%)	269 (39.2%)	123 (17.9%)	43 (6.3%)	687 (100%)	2.82
	여	22 (3.4%)	168 (25.8%)	290 (44.6%)	143 (22.0%)	27 (4.2%)	650 (100%)	2.98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2 (11.3%)	66 (23.3%)	118 (41.7%)	48 (17.0%)	19 (6.7%)	283 (100%)	2.84
	상업계열 특성화고	35 (5.2%)	174 (25.7%)	301 (44.5%)	129 (19.1%)	38 (5.6%)	677 (100%)	2.94
	농업계열 특성화고	14 (10.5%)	27 (20.3%)	60 (45.1%)	30 (22.6%)	2 (1.5%)	133 (100%)	2.84
	마이스터고	22 (10.4%)	59 (27.8%)	72 (34.0%)	51 (24.1%)	8 (3.8%)	212 (100%)	2.83
	종합고	0 (0%)	13 (40.6%)	8 (25.0%)	8 (25.0%)	3 (9.4%)	32 (100%)	3.03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②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의욕’

노동 의욕(“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은 평균 3.47로 응답자들이 노동 의욕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재학생 2학년(3.57), 1학년(3.45), 3학년(3.40) 순으로 노동 의욕이 낮았으며, 성별은 여자(3.55)가 남자(3.40)보다 노동 의욕이 낮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았을 때 종합고(3.75), 마이스터고(3.52), 상업계열 특성화고(3.49), 공업계열 특성화고(3.42), 농업계열 특성화고(3.35) 순으로 노동 의욕이 낮았다.

[표 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 의욕’

(단위 : 명, %)

노동 의욕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전체	73 (5.46%)	198 (14.81%)	367 (27.45%)	425 (31.79%)	274 (20.49%)	1,337 (100%)	3.47	
학년	재학생 1학년	23 (5.3%)	70 (16.3%)	114 (26.5%)	140 (32.6%)	83 (19.3%)	430 (100%)	3.45
	재학생 2학년	25 (5.6%)	60 (13.5%)	109 (24.6%)	134 (30.2%)	115 (26.0%)	443 (100%)	3.57
	재학생 3학년	25 (5.4%)	68 (14.7%)	144 (31.0%)	150 (32.3%)	77 (16.6%)	464 (100%)	3.40
성별	남	53 (7.7%)	102 (14.8%)	193 (28.1%)	195 (28.4%)	144 (21.0%)	687 (100%)	3.40
	여	20 (3.1%)	96 (14.8%)	174 (26.8%)	229 (35.2%)	131 (20.2%)	650 (100%)	3.55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19 (6.7%)	43 (15.2%)	82 (29.0%)	79 (27.9%)	60 (21.2%)	283 (100%)	3.42
	상업계열 특성화고	36 (5.3%)	98 (14.5%)	185 (27.3%)	216 (31.9%)	142 (21.0%)	677 (100%)	3.49
	농업계열 특성화고	8 (6.0%)	20 (15.0%)	40 (30.1%)	47 (35.3%)	18 (13.5%)	133 (100%)	3.35
	마이스터고	10 (4.7%)	33 (15.6%)	52 (24.5%)	70 (33.0%)	47 (22.2%)	212 (100%)	3.52
	종합고	0 (0%)	4 (12.5%)	8 (25.0%)	12 (37.5%)	8 (25.0%)	32 (100%)	3.75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리함

③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의 공정한 대가’

‘노동의 공정한 대가(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 에 관한 평균은 2.76으로 노동의 대가가 약간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2학년(2.68), 3학년(2.79), 1학년(2.82) 순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성별은 남자와 여자(2.76)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종합고(2.50), 상업계열 특성화고(2.73), 농업계열 특성화고(2.74), 공업계열 특성화고(2.78), 마이스터고(2.90) 순으로 노동의 공정한 대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표 9]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의 공정한 대가’

(단위 : 명, %)

노동의 공정한 대가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142 (10.62%)	378 (28.27%)	532 (39.79%)	223 (16.68%)	62 (4.64%)	1,337 (100%)	2.76	
학년	재학생 1학년	36 (8.4%)	126 (29.3%)	172 (40.0%)	72 (16.7%)	24 (5.6%)	430 (100%)	2.82
	재학생 2학년	62 (14.0%)	126 (28.4%)	169 (38.1%)	63 (14.2%)	23 (5.2%)	443 (100%)	2.68
	재학생 3학년	44 (9.5%)	126 (27.2%)	191 (41.2%)	88 (19.0%)	15 (3.2%)	464 (100%)	2.79
성별	남	87 (12.7%)	179 (26.1%)	271 (39.4%)	109 (15.9%)	41 (6.0%)	687 (100%)	2.76
	여	55 (8.5%)	199 (30.6%)	261 (40.2%)	114 (17.5%)	21 (3.2%)	650 (100%)	2.76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4 (12.0%)	75 (26.5%)	109 (28.5%)	48 (17.0%)	17 (6.0%)	283 (100%)	2.78
	상업계열 특성화고	73 (10.8%)	198 (29.2%)	270 (39.9%)	112 (16.5%)	24 (3.5%)	677 (100%)	2.73
	농업계열 특성화고	12 (9.0%)	36 (27.1%)	62 (46.6%)	20 (15.0%)	3 (2.3%)	133 (100%)	2.74
	마이스터고	21 (9.9%)	57 (26.9%)	73 (34.4%)	43 (20.3%)	18 (8.5%)	212 (100%)	2.90
	종합고	2 (6.3%)	12 (37.5%)	18 (56.3%)	0 (0%)	0 (0%)	32 (100%)	2.50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④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면과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이다”)’은 평균 2.96으로 중간값에 근사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보통(482명, 36.1%)보다 그러함(323명, 24.2%), 그렇지 않음(318명, 23.8%)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상태에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2학년(3.04), 1학년(2.91), 3학년(2.92) 순으로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을 중시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2.98)가 여자(2.94)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3.13), 공업계열 특성화고(3.03), 종합고(3.00), 상업계열 특성화고와 농업계열 특성화고(2.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

(단위 : 명, %)

대학 진학 동기로서의 직업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면과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122 (9.12%)	318 (23.78%)	482 (36.05%)	323 (24.16%)	92 (6.88%)	1,337 (100%)	2.96	
학년	재학생 1학년	43 (10.0%)	109 (25.3%)	149 (34.7%)	102 (23.7%)	27 (6.3%)	430 (100%)	2.91
	재학생 2학년	42 (9.5%)	93 (21.0%)	155 (35.0%)	110 (24.8%)	43 (9.7%)	443 (100%)	3.04
	재학생 3학년	37 (8.0%)	116 (25.0%)	179 (38.6%)	110 (23.7%)	22 (4.7%)	464 (100%)	2.92
성별	남	65 (9.5%)	153 (22.3%)	260 (37.8%)	149 (21.7%)	60 (8.7%)	687 (100%)	2.98
	여	57 (8.8%)	165 (25.4%)	223 (34.3%)	173 (26.6%)	32 (4.9%)	650 (100%)	2.94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22 (7.8%)	61 (21.6%)	110 (38.9%)	67 (23.7%)	23 (8.1%)	283 (100%)	3.03
	상업계열 특성화고	73 (10.8%)	168 (24.8%)	241 (35.6%)	153 (22.6%)	42 (6.2%)	677 (100%)	2.89
	농업계열 특성화고	8 (6.0%)	40 (30.1%)	47 (35.3%)	34 (25.6%)	4 (3.0%)	133 (100%)	2.89
	마이스터고	17 (8.0%)	42 (19.8%)	72 (34.0%)	59 (27.8%)	22 (10.4%)	212 (100%)	3.13
	종합고	2 (6.3%)	7 (21.9%)	13 (40.6%)	9 (28.1%)	1 (3.1%)	32 (100%)	3.00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⑤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에 대한 귀천의식’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3D업종은 남들이 보기 창피해서 피하고 싶다”)은 평균 2.78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1학년(2.83), 2학년(2.82), 3학년(2.70) 순으로 귀천의식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자(2.88)가 남자(2.69)보다 귀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 일수록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2.85), 상업계열 특성화고(2.84), 종합고(2.81), 공업계열 특성화고(2.65), 농업계열 특성화고(2.64) 순으로 귀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노동에 대한 귀천의식’

(단위 : 명, %)

노동에 대한 귀천의식 (3D업종은 남들이 보기 창피해서 피하고 싶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전체	153 (11.44%)	353 (26.40%)	531 (39.72%)	234 (17.50%)	66 (4.94%)	1,337 (100%)	2.78	
학년	재학생 1학년	52 (12.1%)	105 (24.4%)	165 (38.4%)	81 (18.8%)	27 (6.3%)	430 (100%)	2.83
	재학생 2학년	47 (10.6%)	116 (26.2%)	178 (40.2%)	74 (16.7%)	28 (6.3%)	443 (100%)	2.82
	재학생 3학년	54 (11.6%)	132 (28.4%)	188 (40.5%)	79 (17.0%)	11 (2.4%)	464 (100%)	2.70
성별	남	101 (14.7%)	181 (26.3%)	269 (39.2%)	103 (15.0%)	33 (4.8%)	687 (100%)	2.69
	여	52 (8.0%)	172 (26.5%)	262 (40.3%)	131 (20.2%)	33 (5.1%)	650 (100%)	2.88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41 (14.5%)	71 (25.1%)	124 (43.8%)	40 (14.1%)	7 (2.5%)	283 (100%)	2.65
	상업계열 특성화고	78 (11.5%)	167 (24.7%)	260 (38.4%)	129 (19.1%)	43 (6.4%)	677 (100%)	2.84
	농업계열 특성화고	16 (12.0%)	41 (30.8%)	55 (41.4%)	17 (12.8%)	4 (3.0%)	133 (100%)	2.64
	마이스터고	15 (7.1%)	65 (30.7%)	81 (38.2%)	39 (18.4%)	12 (5.7%)	212 (100%)	2.85
	종합고	3 (9.4%)	9 (28.1%)	11 (34.4%)	9 (28.1%)	0 (0.0%)	32 (100%)	2.81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리함

⑥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남들이 보기 좋은 일”은 보수가 적더라도 종사하고 싶다)은 평균 2.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3학년(2.82), 2학년(2.80), 1학년(2.71) 순으로 보 수의 영향이 작았으며, 성별로는 남자(2.84)가 여자(2.72)보다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상업계열 특성화고·농업계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2.78), 공업계열 특성화고(2.77), 종합고(2.66)순으로 보수의 영향이 적었다.

[표 12]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

(단위 : 명, %)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 보수가 적더라도 종사하고 싶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122 (9.12%)	365 (27.30%)	600 (44.88%)	187 (13.99%)	63 (4.71%)	1,337 (100%)	2.78	
학년	재학생 1학년	46 (10.7%)	125 (29.1%)	179 (41.6%)	66 (15.3%)	14 (3.3%)	430 (100%)	2.71
	재학생 2학년	46 (10.4%)	112 (25.3%)	199 (44.9%)	58 (13.1%)	28 (6.3%)	443 (100%)	2.80
	재학생 3학년	30 (6.5%)	129 (27.8%)	221 (47.6%)	63 (13.6%)	21 (4.5%)	464 (100%)	2.82
성별	남	65 (9.5%)	173 (25.2%)	306 (44.5%)	96 (14.0%)	47 (6.8%)	687 (100%)	2.84
	여	57 (8.8%)	193 (29.7%)	293 (45.1%)	91 (14.0%)	16 (2.5%)	650 (100%)	2.72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28 (9.9%)	75 (26.5%)	128 (45.2%)	37 (13.1%)	15 (5.3%)	283 (100%)	2.77
	상업계열 특성화고	62 (9.2%)	181 (26.7%)	306 (45.2%)	98 (14.5%)	30 (4.4%)	677 (100%)	2.78
	농업계열 특성화고	10 (7.5%)	38 (28.6%)	59 (44.4%)	23 (17.3%)	3 (2.3%)	133 (100%)	2.78
	마이스터고	21 (9.9%)	59 (27.8%)	92 (43.4%)	25 (11.8%)	15 (7.1%)	212 (100%)	2.78
	종합고	1 (3.1%)	13 (40.6%)	14 (43.8%)	4 (12.5%)	0 (0.0%)	32 (100%)	2.66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⑦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

직업윤리(“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적인 직장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는 평균 2.1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생 1학년(2.10), 3학년(2.14), 2학년(2.16) 순으로 직업윤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1.86)가 남자(2.39)보다 직업윤리가 더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종합고(1.97), 상업계열 특성화고(2.03), 농업계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2.18), 공업계열 특성화고(2.34) 순으로 직업윤리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윤리’

(단위 : 명, %)

직업윤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적인 직장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484 (36.20%)	389 (29.09%)	322 (24.08%)	87 (6.51%)	55 (4.11%)	1,337 (100%)	2.13	
학년	재학생 1학년	160 (37.2%)	129 (30.0%)	97 (22.6%)	28 (6.5%)	16 (3.7%)	430 (100%)	2.10
	재학생 2학년	161 (36.3%)	127 (28.7%)	103 (23.3%)	25 (5.6%)	27 (6.1%)	443 (100%)	2.16
	재학생 3학년	163 (35.1%)	133 (28.7%)	121 (26.1%)	35 (7.5%)	12 (2.6%)	464 (100%)	2.14
성별	남	195 (28.4%)	181 (26.3%)	206 (30.0%)	59 (8.6%)	46 (6.7%)	687 (100%)	2.39
	여	289 (44.5%)	208 (32.0%)	115 (17.7%)	29 (4.5%)	9 (1.4%)	650 (100%)	1.86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80 (28.3%)	72 (25.4%)	97 (34.3%)	22 (7.8%)	12 (4.2%)	283 (100%)	2.34
	상업계열 특성화고	274 (40.5%)	196 (29.0%)	146 (21.6%)	35 (5.2%)	26 (3.8%)	677 (100%)	2.03
	농업계열 특성화고	44 (33.1%)	42 (31.6%)	29 (21.8%)	15 (11.3%)	3 (2.3%)	133 (100%)	2.18
	마이스터고	76 (35.8%)	63 (29.7%)	45 (21.2%)	15 (7.1%)	13 (6.1%)	212 (100%)	2.18
	종합고	10 (31.3%)	16 (50.0%)	4 (12.5%)	1 (3.1%)	1 (3.1%)	32 (100%)	1.97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⑧ 종합적 결과

충남의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약간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반대로 노동 의욕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의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학진학 동기로서의 직업은 보통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귀천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성별, 학교유형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 학교유형별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노동 의욕이 적었으며,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4)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① 종합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으로는 생계유지(4.25), 전문성(3.79), 자아실현(3.78), 정신적·육체적 건강(3.59), 사회·공동체 유지발전(3.50), 명예획득(3.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성별, 학교유형별로도 비슷한 순위를 보였으나, 재학생 2학년과 종합고의 경우 전문성 계발과 자아실현의 순위가 각각 3위와 2위로 바뀌었으며, 농업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명예획득이 사회·공동체 유지발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14]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

(단위 : 평균, (순위))

구분	질문	생계유지	전문성 계발	자아실현	정신적·육체적 건강	사회·공동체 유지발전	명예획득
전체		4.25 (1)	3.79 (2)	3.78 (3)	3.59 (4)	3.50 (5)	3.40 (6)
학년	재학생 1학년	4.24 (1)	3.80 (2)	3.78 (3)	3.67 (4)	3.59 (5)	3.42 (6)
	재학생 2학년	4.26 (1)	3.72 (3)	3.74 (2)	3.50 (4)	3.39 (5)	3.30 (6)
	재학생 3학년	4.25 (1)	3.84 (2)	3.81 (3)	3.60 (4)	3.51 (5)	3.47 (6)
성별	남	4.15 (1)	3.77 (2)	3.77 (2)	3.63 (4)	3.46 (5)	3.37 (6)
	여	4.35 (1)	3.80 (2)	3.79 (3)	3.55 (4)	3.54 (5)	3.43 (6)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4.14 (1)	3.68 (2)	3.68 (2)	3.55 (4)	3.41 (5)	3.28 (6)
	상업계열 특성화고	4.28 (1)	3.78 (2)	3.78 (2)	3.56 (4)	3.53 (5)	3.41 (6)
	농업계열 특성화고	4.06 (1)	3.80 (2)	3.70 (3)	3.50 (4)	3.34 (6)	3.38 (5)
	마이스터고	4.41 (1)	4.01 (2)	3.93 (3)	3.84 (4)	3.62 (5)	3.53 (6)
	종합고	4.34 (1)	3.81 (3)	4.00 (2)	3.47 (4)	3.47 (4)	3.47 (4)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②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선택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갖는 학생은 재학생 2학년(4.26), 3학년(4.25), 1학년(4.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4.35)가 남자(4.14)보다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41), 종합고(4.34), 상업계열 특성화고(4.28), 공업계열 특성화고(4.14), 농업계열 특성화고(4.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생계 유지’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1.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하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7 (1.6%)	4 (0.9%)	73 (17.0%)	141 (32.8%)	205 (47.7%)	430 (100%)	4.24
	재학생 2학년	5 (1.1%)	3 (0.7%)	82 (18.5%)	134 (30.2%)	219 (49.4%)	443 (100%)	4.26
	재학생 3학년	3 (0.6%)	7 (1.5%)	81 (17.5%)	152 (32.8%)	221 (47.6%)	464 (100%)	4.25
성별	남	12 (1.7%)	11 (1.6%)	150 (21.8%)	197 (28.7%)	317 (46.1%)	687 (100%)	4.15
	여	3 (0.5%)	3 (0.5%)	86 (13.2%)	230 (35.4%)	328 (50.5%)	650 (100%)	4.35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5 (1.8%)	1 (0.4%)	67 (23.7%)	85 (30.0%)	125 (44.2%)	283 (100%)	4.14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5 (0.7%)	116 (17.1%)	213 (31.5%)	336 (49.6%)	677 (100%)	4.28
	농업계열 특성화고	3 (2.3%)	3 (2.3%)	28 (21.1%)	48 (36.1%)	51 (38.3%)	133 (100%)	4.06
	마이스터고	0 (0.0%)	5 (2.4%)	21 (9.9%)	68 (32.1%)	118 (55.7%)	212 (100%)	4.41
	종합고	0 (0.0%)	0 (0.0%)	4 (12.5%)	13 (40.6%)	15 (46.9%)	32 (100%)	4.34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③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선택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선택은 재학생 3학년(3.81), 1학년(3.78), 2학년(3.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3.79)가 남자(3.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종합고(4.00), 마이스터고(3.93), 상업계열 특성화고(3.78), 농업계열 특성화고(3.70), 공업계열 특성화고(3.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자아실현'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2. 자아실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8 (1.9%)	6 (1.4%)	150 (34.9%)	173 (40.2%)	93 (21.6%)	430 (100%)	3.78
	재학생 2학년	8 (1.8%)	10 (2.3%)	171 (38.6%)	153 (34.5%)	101 (22.8%)	443 (100%)	3.74
	재학생 3학년	2 (0.4%)	10 (2.2%)	174 (37.5%)	166 (35.8%)	112 (24.1%)	464 (100%)	3.81
성별	남	13 (1.9%)	16 (2.3%)	257 (37.4%)	231 (33.6%)	170 (24.7%)	687 (100%)	3.77
	여	5 (0.8%)	10 (1.5%)	238 (36.6%)	261 (40.2%)	136 (20.9%)	650 (100%)	3.79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6 (2.1%)	8 (2.8%)	120 (42.4%)	86 (30.4%)	63 (22.3%)	283 (100%)	3.68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16 (2.4%)	251 (37.1%)	249 (36.8%)	154 (22.7%)	677 (100%)	3.78
	농업계열 특성화고	2 (1.5%)	0 (0.0%)	56 (42.1%)	52 (39.1%)	23 (17.3%)	133 (100%)	3.70
	마이스터고	3 (1.4%)	2 (0.9%)	60 (28.3%)	89 (42.0%)	58 (27.4%)	212 (100%)	3.93
	종합고	0 (0.0%)	0 (0.0%)	8 (25.0%)	16 (50.0%)	8 (25.0%)	32 (100%)	4.00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④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직업선택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직업선택에 대하여는 재학생 3학년(3.84), 1학년(3.80), 2학년(3.7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80) 남학생(3.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01), 종합고(3.81), 농업계열 특성화고(3.80), 상업계열 특성화고(3.78), 공업계열 특성화고(3.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전문성 계발'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3.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8 (1.9%)	13 (3.0%)	142 (33.0%)	163 (37.9%)	104 (24.2%)	430 (100%)	3.80
	재학생 2학년	9 (2.0%)	14 (3.2%)	172 (38.8%)	144 (32.5%)	104 (23.5%)	443 (100%)	3.72
	재학생 3학년	2 (0.4%)	13 (2.8%)	163 (35.1%)	165 (35.6%)	121 (26.1%)	464 (100%)	3.84
성별	남	13 (1.9%)	25 (3.6%)	247 (36.0%)	222 (32.3%)	180 (26.2%)	687 (100%)	3.77
	여	6 (0.9%)	15 (2.3%)	230 (35.4%)	250 (38.5%)	149 (22.9%)	650 (100%)	3.80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6 (2.1%)	15 (5.3%)	119 (42.0%)	82 (29.0%)	61 (21.6%)	283 (100%)	3.68
	상업계열 특성화고	10 (1.5%)	18 (2.7%)	245 (36.2%)	241 (35.6%)	163 (24.1%)	677 (100%)	3.78
	농업계열 특성화고	2 (1.5%)	2 (1.5%)	47 (35.3%)	52 (35.6%)	30 (24.1%)	133 (100%)	3.80
	마이스터고	1 (0.5%)	4 (1.9%)	55 (25.9%)	84 (39.6%)	68 (32.1%)	212 (100%)	4.01
	종합고	0 (0%)	1 (3.1%)	11 (34.4%)	13 (40.6%)	7 (21.9%)	32 (100%)	3.81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⑤ 명예를 얻기 위한 직업선택

명예 획득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는 청소년은 재학생 3학년(3.47), 1학년(3.42), 2학년(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3.43) 남학생(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3.53), 종합고(3.47), 상업계열 특성화고(3.41), 농업계열 특성화고(3.38), 공업계열 특성화고(3.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명예 획득’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4. 명예를 얻기 위하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14 (3.3%)	47 (10.9%)	176 (40.9%)	130 (30.2%)	63 (14.7%)	430 (100%)	3.42
	재학생 2학년	22 (5.0%)	48 (10.8%)	207 (46.7%)	107 (24.2%)	59 (13.3%)	443 (100%)	3.30
	재학생 3학년	7 (1.5%)	43 (9.3%)	211 (45.5%)	129 (27.8%)	74 (15.9%)	464 (100%)	3.47
성별	남	34 (4.9%)	76 (11.1%)	302 (44.0%)	153 (22.3%)	122 (17.8%)	687 (100%)	3.37
	여	9 (1.4%)	62 (9.5%)	292 (44.9%)	213 (32.8%)	74 (11.4%)	650 (100%)	3.43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12 (4.2%)	34 (12.0%)	138 (48.8%)	60 (21.2%)	39 (13.8%)	283 (100%)	3.28
	상업계열 특성화고	21 (3.1%)	68 (10.0%)	304 (44.9%)	183 (27.0%)	101 (14.9%)	677 (100%)	3.41
	농업계열 특성화고	4 (3.0%)	15 (11.3%)	55 (41.4%)	44 (33.1%)	15 (11.3%)	133 (100%)	3.38
	마이스터고	6 (2.8%)	19 (9.0%)	83 (39.2%)	64 (30.2%)	40 (18.9%)	212 (100%)	3.53
	종합고	0 (0%)	2 (6.3%)	14 (43.8%)	15 (46.9%)	1 (3.1%)	32 (100%)	3.47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⑥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직업선택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직업선택은 재학생 1학년(3.59), 3학년(3.51), 2학년(3.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3.54)가 남자(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3.62), 상업계열 특성화고(3.53), 종합고(3.47), 공업계열 특성화고(3.41), 농업계열 특성화고(3.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5.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12 (2.8%)	22 (5.1%)	173 (40.2%)	145 (33.7%)	78 (18.1%)	430 (100%)	3.59
	재학생 2학년	14 (3.2%)	38 (8.6%)	213 (48.1%)	116 (26.2%)	62 (14.0%)	443 (100%)	3.39
	재학생 3학년	5 (1.1%)	35 (7.5%)	214 (46.1%)	138 (29.7%)	72 (15.5%)	464 (100%)	3.51
성별	남	22 (3.2%)	53 (7.7%)	320 (46.6%)	171 (24.9%)	121 (17.6%)	687 (100%)	3.46
	여	9 (1.4%)	42 (6.5%)	280 (43.1%)	228 (35.1%)	91 (14.0%)	650 (100%)	3.54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5 (1.8%)	21 (7.4%)	147 (51.9%)	73 (25.8%)	37 (13.1%)	283 (100%)	3.41
	상업계열 특성화고	16 (2.4%)	46 (6.8%)	293 (43.3%)	207 (30.6%)	115 (17.0%)	677 (100%)	3.53
	농업계열 특성화고	5 (3.8%)	12 (9.0%)	64 (48.1%)	37 (27.8%)	15 (11.3%)	133 (100%)	3.34
	마이스터고	5 (2.4%)	14 (6.6%)	81 (38.2%)	69 (32.5%)	43 (20.3%)	212 (100%)	3.62
	종합고	0 (0%)	2 (6.3%)	15 (46.9%)	13 (40.6%)	2 (6.3%)	32 (100%)	3.47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⑦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한 직업선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직업선택으로는 재학생 1학년(3.67), 3학년(3.60), 2학년(3.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63)이 여학생(3.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3.84), 상업계열 특성화고(3.56), 공업계열 특성화고(3.55), 농업계열 특성화고(3.50), 종합고(3.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단위 : 명,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에 대한 견해								
6.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 년	재학생 1학년	8 (1.9%)	20 (4.7%)	169 (39.3%)	142 (33.0%)	91 (21.2%)	430 (100%)	3.67
	재학생 2학년	12 (2.7%)	31 (7.0%)	201 (45.4%)	119 (26.9%)	80 (18.1%)	443 (100%)	3.50
	재학생 3학년	7 (1.5%)	29 (6.3%)	198 (42.7%)	136 (29.3%)	94 (20.3%)	464 (100%)	3.60
성 별	남	17 (2.5%)	38 (5.5%)	277 (40.3%)	200 (29.1%)	155 (22.6%)	687 (100%)	3.63
	여	10 (1.5%)	42 (6.5%)	291 (44.8%)	197 (30.3%)	110 (16.9%)	650 (100%)	3.55
학 교 유 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6 (2.1%)	19 (6.7%)	126 (44.5%)	77 (27.2%)	55 (19.4%)	283 (100%)	3.55
	상업계열 특성화고	17 (2.5%)	41 (6.1%)	297 (43.9%)	193 (28.5%)	129 (19.1%)	677 (100%)	3.56
	농업계열 특성화고	3 (2.3%)	6 (4.5%)	64 (48.1%)	41 (30.8%)	19 (14.3%)	133 (100%)	3.50
	마이스터고	1 (0.5%)	11 (5.2%)	66 (31.1%)	76 (35.8%)	58 (27.4%)	212 (100%)	3.84
	종합고	0 (0%)	3 (9.4%)	15 (46.8%)	10 (31.3%)	4 (12.5%)	32 (100%)	3.47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5)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① 종합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에 대해 충남의 청소년들은 적성에 맞을 것(4.31), 일에 대한 만족도(4.31), 보상 수준(4.23), 장래성(4.14), 사내 인간관계(4.10), 재미있을 것(4.06), 자아실현(3.9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같은 순위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적성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업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사내 인간관계, 재미있을 것, 자아실현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반적인 순위가 상이했으며, 종합고의 경우 보상 수준, 장래성, 사내 인간관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21]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단위 : 평균, (순위))

구분	질문	적성에 맞을 것	일에 대한 만족도	보상(임금) 수준	장래성	사내 인간관계	재미 있을 것	자아실현
전체		4.31 (1)	4.31 (2)	4.23 (3)	4.14 (4)	4.10 (5)	4.06 (6)	3.95 (7)
학년	재학생 1학년	4.36 (1)	4.33 (2)	4.23 (3)	4.16 (4)	4.09 (5)	4.12 (6)	4.00 (7)
	재학생 2학년	4.25 (1)	4.25 (1)	4.24 (3)	4.07 (4)	4.04 (5)	4.02 (6)	3.88 (7)
	재학생 3학년	4.32 (1)	4.32 (1)	4.22 (3)	4.20 (4)	4.17 (5)	4.05 (6)	3.98 (7)
성별	남	4.20 (2)	4.23 (1)	4.16 (3)	4.10 (4)	4.07 (5)	4.04 (6)	3.91 (7)
	여	4.50 (1)	4.39 (2)	4.30 (3)	4.19 (4)	4.13 (5)	4.09 (6)	4.00 (7)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4.16 (2)	4.18 (1)	4.12 (3)	4.02 (4)	4.02 (4)	3.96 (6)	3.80 (7)
	상업계열 특성화고	4.34 (1)	4.31 (2)	4.23 (3)	4.16 (4)	4.09 (5)	4.04 (6)	3.99 (7)
	농업계열 특성화고	4.33 (1)	4.29 (2)	4.09 (3)	4.08 (4)	3.94 (7)	4.10 (5)	3.97 (6)
	마이스터고	4.40 (3)	4.48 (1)	4.41 (2)	4.29 (5)	4.33 (4)	4.26 (6)	4.05 (7)
	종합고	4.41 (1)	4.34 (2)	4.31 (3)	4.09 (5)	4.25 (4)	3.94 (6)	3.90 (7)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②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적성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적성은 재학생 1학년(4.36), 3학년(4.32), 2학년(4.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4.50), 남학생(4.20) 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종합고(4.41), 마이스터고(4.40), 상업계열 특성화고(4.34), 농업계열 특성화고(4.33), 공업계열 특성화고(4.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적성에 맞을 것’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1. 적성에 맞을 것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5 (1.2%)	3 (0.7%)	63 (14.7%)	119 (27.7%)	240 (55.8%)	430 (100.0%)	4.36
	재학생 2학년	7 (1.6%)	7 (1.6%)	81 (18.3%)	120 (27.1%)	228 (51.5%)	443 (100.0%)	4.25
	재학생 3학년	0 (0.0%)	8 (1.7%)	79 (17.0%)	134 (28.9%)	243 (52.4%)	464 (100.0%)	4.32
성별	남	10 (1.5%)	15 (2.2%)	137 (19.9%)	188 (27.4%)	337 (49.1%)	687 (100.0%)	4.20
	여	2 (0.3%)	3 (0.5%)	86 (13.2%)	185 (28.5%)	374 (57.5%)	650 (100.0%)	4.50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5 (1.8%)	71 (25.1%)	68 (24.0%)	136 (48.1%)	283 (100.0%)	4.16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7 (1.0%)	106 (15.7%)	189 (27.9%)	368 (54.4%)	677 (100.0%)	4.34
	농업계열 특성화고	1 (8%)	2 (1.5%)	19 (14.3%)	41 (30.8%)	70 (52.6%)	133 (100.0%)	4.33
	마이스터고	1 (5%)	4 (1.9%)	24 (11.3%)	62 (29.2%)	121 (57.1%)	212 (100.0%)	4.40
	종합고	0 (0%)	0 (0%)	3 (9.4%)	13 (40.6%)	16 (50.0%)	32 (100.0%)	4.41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③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일에 대한 만족도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하여 1학년(4.33), 3학년(4.32), 2학년(4.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4.39), 남학생(4.23) 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증시했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48), 종합고(4.34), 상업계열 특성화고(4.31), 농업계열 특성화고(4.29), 공업계열 특성화고(4.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2. 일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4 (0.9%)	4 (0.9%)	60 (14.0%)	127 (29.5%)	235 (54.7%)	430 (100.0%)	4.33
	재학생 2학년	8 (1.8%)	5 (1.1%)	72 (16.3%)	140 (31.6%)	218 (49.2%)	443 (100.0%)	4.25
	재학생 3학년	0 (0%)	4 (0.9%)	83 (17.9%)	138 (29.7%)	239 (51.5%)	464 (100.0%)	4.32
성별	남	9 (1.3%)	9 (1.3%)	133 (19.4%)	199 (29.0%)	337 (49.1%)	687 (100.0%)	4.23
	여	3 (0.5%)	4 (0.6%)	82 (12.6%)	206 (31.7%)	355 (54.6%)	650 (100.0%)	4.39
학교 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3 (1.1%)	64 (22.6%)	82 (29.0%)	131 (46.3%)	283 (100.0%)	4.18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5 (0.7%)	109 (16.1%)	203 (30.0%)	353 (52.1%)	677 (100.0%)	4.31
	농업계열 특성화고	1 (0.8%)	2 (1.5%)	20 (15.0%)	45 (33.8%)	65 (48.9%)	133 (100.0%)	4.29
	마이스터고	0 (0%)	3 (1.4%)	20 (9.4%)	62 (29.2%)	127 (59.9%)	212 (100.0%)	4.48
	종합고	1 (3.1%)	0 (0%)	2 (6.3%)	13 (40.6%)	16 (50.0%)	32 (100.0%)	4.34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④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보상(임금) 수준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보상(임금) 수준에 관하여 재학생 2학년(4.24), 1학년(4.23), 3학년(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4.30) 남학생(4.16) 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41), 종합고(4.31), 상업계열 특성화고(4.23), 공업계열 특성화고(4.12), 농업계열 특성화고(4.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보상(임금) 수준’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3. 보상(임금)수준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6 (1.4%)	2 (0.5%)	75 (17.4%)	153 (35.6%)	194 (45.1%)	430 (100.0%)	4.23
	재학생 2학년	7 (1.6%)	4 (0.9%)	88 (19.9%)	122 (27.5%)	222 (50.1%)	443 (100.0%)	4.24
	재학생 3학년	0 (0%)	2 (0.4%)	97 (20.9%)	164 (35.3%)	201 (43.3%)	464 (100.0%)	4.22
성별	남	10 (1.5%)	5 (0.7%)	168 (24.5%)	188 (27.4%)	316 (46.0%)	687 (100.0%)	4.16
	여	3 (0.5%)	3 (0.5%)	92 (14.2%)	251 (38.6%)	301 (46.3%)	650 (100.0%)	4.30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2 (0.7%)	78 (27.6%)	73 (25.8%)	127 (44.9%)	283 (100.0%)	4.12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4 (0.6%)	123 (18.2%)	233 (34.4%)	310 (45.8%)	677 (100.0%)	4.23
	농업계열 특성화고	1 (0.8%)	1 (0.8%)	30 (22.6%)	54 (40.6%)	47 (35.3%)	133 (100.0%)	4.09
	마이스터고	1 (0.5%)	1 (0.5%)	27 (12.7%)	65 (30.7%)	118 (55.7%)	212 (100.0%)	4.41
	종합고	1 (3.1%)	0 (0%)	2 (6.3%)	14 (43.8%)	15 (46.9%)	32 (100.0%)	4.31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⑤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자아실현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에 관하여 재학생 1학년(4.00), 3학년(3.98), 2학년(3.8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4.00) 남학생(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05), 상업계열 특성화고(3.99), 농업계열 특성화고(3.97), 종합고(3.90), 공업계열 특성화고(3.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자아실현’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4.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5 (1.2%)	4 (0.9%)	119 (27.7%)	159 (37.0%)	143 (33.3%)	430 (100.0%)	4.00
	재학생 2학년	7 (1.6%)	10 (2.3%)	144 (32.5%)	152 (34.3%)	130 (29.3%)	443 (100.0%)	3.88
	재학생 3학년	3 (0.6%)	7 (1.5%)	140 (30.2%)	159 (34.3%)	155 (33.4%)	464 (100.0%)	3.98
성별	남	13 (1.9%)	10 (1.5%)	223 (32.5%)	218 (31.7%)	223 (32.5%)	687 (100.0%)	3.91
	여	2 (0.3%)	11 (1.7%)	180 (27.7%)	252 (38.8%)	205 (31.5%)	650 (100.0%)	4.00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6 (2.1%)	114 (40.3%)	81 (28.6%)	79 (27.9%)	283 (100.0%)	3.80
	상업계열 특성화고	6 (0.9%)	5 (0.7%)	204 (30.1%)	239 (35.3%)	223 (32.9%)	677 (100.0%)	3.99
	농업계열 특성화고	2 (1.5%)	2 (1.5%)	34 (25.6%)	55 (41.4%)	40 (30.1%)	133 (100.0%)	3.97
	마이스터고	4 (1.9%)	7 (3.3%)	41 (19.3%)	83 (39.2%)	77 (36.3%)	212 (100.0%)	4.05
	종합고	0 (0%)	1 (3.1%)	10 (31.3%)	12 (37.5%)	9 (28.1%)	32 (100.0%)	3.90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⑥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재미있을 것”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재미있을 것’ 은 재학생 1학년(4.12), 3학년(4.05), 2학년(4.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4.09), 남자(4.04) 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26), 농업계열 특성화고(4.10), 상업계열 특성화고(4.04), 공업계열 특성화고(3.96), 종합고(3.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재미 있을 것’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5. 재미있을 것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4 (0.9%)	6 (1.4%)	103 (24.0%)	138 (32.1%)	179 (41.6%)	430 (100.0%)	4.12
	재학생 2학년	8 (1.8%)	12 (2.7%)	112 (25.3%)	143 (32.3%)	168 (37.9%)	443 (100.0%)	4.02
	재학생 3학년	3 (0.6%)	9 (1.9%)	131 (28.2%)	138 (29.7%)	183 (39.4%)	464 (100.0%)	4.05
성별	남	12 (1.7%)	15 (2.2%)	182 (26.5%)	201 (29.3%)	277 (40.3%)	687 (100.0%)	4.04
	여	3 (0.5%)	12 (1.8%)	164 (25.2%)	218 (33.5%)	253 (38.9%)	650 (100.0%)	4.09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4 (1.4%)	5 (1.8%)	93 (32.9%)	79 (27.9%)	102 (36.0%)	283 (100.0%)	3.96
	상업계열 특성화고	7 (1.0%)	13 (1.9%)	182 (26.9%)	214 (31.6%)	261 (38.6%)	677 (100.0%)	4.04
	농업계열 특성화고	2 (1.5%)	4 (3.0%)	26 (19.5%)	48 (36.1%)	53 (39.8%)	133 (100.0%)	4.10
	마이스터고	2 (0.9%)	4 (1.9%)	35 (16.5%)	67 (31.6%)	104 (49.1%)	212 (100.0%)	4.26
	종합고	0 (0%)	1 (3.1%)	10 (31.3%)	11 (34.4%)	10 (31.3%)	32 (100.0%)	3.94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⑦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장래성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장래성에 관해서는 재학생 3학년(4.20), 1학년(4.16), 2학년(4.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4.19) 남학생(4.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29), 상업계열 특성화고(4.16), 종합고(4.09), 농업계열 특성화고(4.08), 공업계열 특성화고(4.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장래성'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6. 장래성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4 (0.9%)	3 (0.7%)	92 (21.4%)	154 (35.8%)	177 (41.2%)	430 (100.0%)	4.16
	재학생 2학년	6 (1.4%)	9 (2.0%)	108 (24.4%)	146 (33.0%)	174 (39.3%)	443 (100.0%)	4.07
	재학생 3학년	0 (0%)	4 (0.9%)	107 (23.1%)	145 (31.3%)	208 (44.8%)	464 (100.0%)	4.20
성별	남	9 (1.3%)	9 (1.3%)	172 (25.0%)	211 (30.7%)	286 (41.6%)	687 (100.0%)	4.10
	여	1 (0.2%)	7 (1.1%)	135 (20.8%)	234 (36.0%)	273 (42.0%)	650 (100.0%)	4.19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3 (1.1%)	85 (30.0%)	85 (30.0%)	107 (37.8%)	283 (100.0%)	4.02
	상업계열 특성화고	6 (0.9%)	9 (1.3%)	147 (21.7%)	224 (33.1%)	291 (43.0%)	677 (100.0%)	4.16
	농업계열 특성화고	1 (0.8%)	2 (1.5%)	32 (24.1%)	49 (36.8%)	49 (36.8%)	133 (100.0%)	4.08
	마이스터고	0 (0%)	1 (0.5%)	36 (17.0%)	75 (35.4%)	100 (47.2%)	212 (100.0%)	4.29
	종합고	0 (0%)	1 (3.1%)	7 (21.9%)	12 (37.5%)	12 (37.5%)	32 (100.0%)	4.09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⑧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사내 인간관계

일·직업선택 기준으로서의 사내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재학생 3학년(4.17), 1학년(4.09), 2학년(4.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4.13) 남자(4.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4.33), 종합고(4.25), 상업계열 특성화고(4.09), 공업계열 특성화고(4.02), 농업계열 특성화고(3.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학년, 성별, 학교유형으로 분류한 '사내 인간관계'

(단위 : 명,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								
7. 사내 인간관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 년	재학생 1학년	7 (1.6%)	5 (1.2%)	95 (22.1%)	157 (36.5%)	166 (38.6%)	430 (100.0%)	4.09
	재학생 2학년	11 (2.5%)	9 (2.0%)	110 (24.8%)	133 (30.0%)	180 (40.6%)	443 (100.0%)	4.04
	재학생 3학년	0 (0%)	4 (0.9%)	118 (25.4%)	135 (29.1%)	207 (44.6%)	464 (100.0%)	4.17
성 별	남	13 (1.9%)	9 (1.3%)	179 (26.1%)	199 (29.0%)	287 (41.8%)	687 (100.0%)	4.07
	여	5 (0.8%)	9 (1.4%)	144 (22.2%)	226 (34.8%)	266 (40.9%)	650 (100.0%)	4.13
학 교 유 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3 (1.1%)	3 (1.1%)	88 (31.1%)	79 (27.9%)	110 (38.9%)	283 (100.0%)	4.02
	상업계열 특성화고	9 (1.3%)	9 (1.3%)	163 (24.1%)	224 (33.1%)	272 (40.2%)	677 (100.0%)	4.09
	농업계열 특성화고	3 (2.3%)	3 (2.3%)	35 (26.3%)	50 (37.6%)	42 (31.6%)	133 (100.0%)	3.94
	마이스터고	3 (1.4%)	1 (0.5%)	33 (15.6%)	62 (29.2%)	113 (53.3%)	212 (100.0%)	4.33
	종합고	0 (0%)	2 (6.3%)	4 (12.5%)	10 (31.3%)	16 (50.0%)	32 (100.0%)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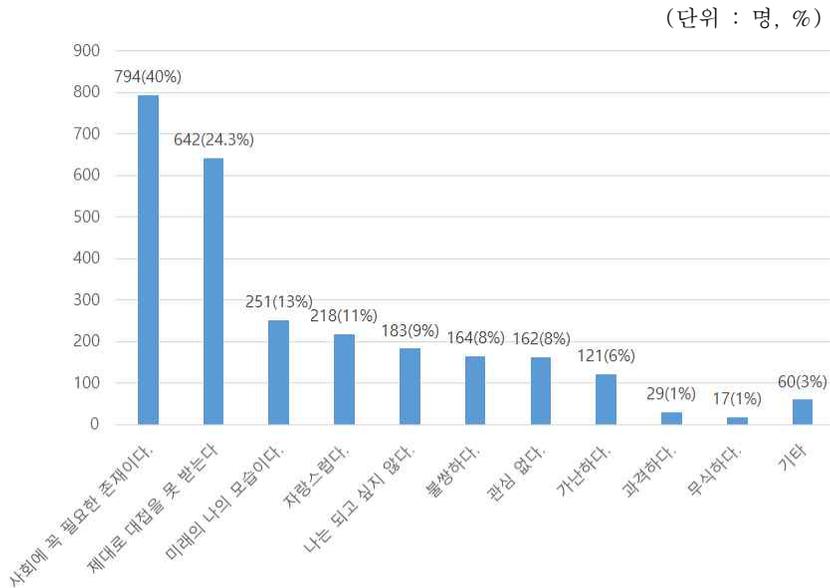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6)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노동자’ 하면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가 794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가 642명(24.3%),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가 251명(9.5%)이었다. “무식하다”는 17명(0.6%)으로 가장 적었으며, “과격하다”가 29명(1.1%), “가난하다”가 121명(4.6%)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힘들어 보인다”, “평범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함” 등이 있었다.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가 30.1%로 가장 많았는데 반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24.3%), “나는 되고 싶지 않다”(9%), “불쌍하다”(8%), “가난하다”(6%), “과격하다”(1%), “무식하다”(1%) 등 부정적 이미지는 4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학생들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4]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7)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설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271명(20%)이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4명(36%)이었다.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582명(44%)이었다.

해당 문항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한” 1학년은 184명(42.8%), 2학년은 261명(58.9%), 3학년은 309명(66.6%)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관해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종합고 25명(78.1%), 농업계열 특성화고 97명(72.9%), 상업계열 특성화고 389명(57.4%), 공업계열 특성화고 157명(55.5%), 마이스터고 83명(4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단위 : 명, %)

구분		현재 하고 있다	해본 경험이 있다	해본 경험이 없다	합계
전체		271 (20%)	484 (36%)	582 (44%)	1,337 (100%)
학년	재학생 1학년	65 (15.1%)	119 (27.7%)	246 (57.2%)	430 (100%)
	재학생 2학년	94 (21.2%)	167 (37.7%)	182 (41.1%)	443 (100%)
	재학생 3학년	112 (24.1%)	197 (42.5%)	155 (33.4%)	464 (100%)
성별	남	136 (19.8%)	242 (35.2%)	309 (45.0%)	687 (100%)
	여	135 (20.8%)	241 (37.1%)	274 (42.2%)	650 (100%)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54 (19.1%)	103 (36.4%)	126 (44.5%)	283 (100%)
	상업계열 특성화고	141 (20.8%)	248 (36.6%)	288 (42.5%)	677 (100%)
	농업계열 특성화고	45 (33.8%)	52 (39.1%)	36 (27.1%)	133 (100%)
	마이스터고	18 (8.5%)	68 (32.1%)	126 (59.4%)	212 (100%)
	종합고	13 (40.6%)	12 (37.5%)	7 (21.9%)	32 (100%)

(8)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업종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한 응답자들 중 332명(24.9%)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이 73명(5.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패스트푸드점이 68명(5.1%)으로 뒤를 이었다. 경험이 가장 적었던 업종은 PC방과 공사장으로 각각 4명(0.3%)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8.4%(246명)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일부분은 특별고용의 형태이다. 특별고용은 알바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노동의 사각지대이다.

[표 30]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업종

(단위 : 명, %)

업종	응답자(비율)
음식점	332(24.83%)
편의점	73(5.46%)
패스트푸드점	68(5.09%)
공장	24(1.80%)
제빵 제과/아이스크림점	22(1.65%)
커피전문점	17(1.27%)
의류/스포츠용품점	18(1.35%)
주유소	7(0.52%)
미용실	4(0.30%)
PC방	4(0.30%)
공사장	4(0.30%)
기타	246(18.4%)

(9)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① 종합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을 위해서”가 평균 4.04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3.61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3.31,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가 3.25로 나타났다.

[표 31] 아르바이트의 목적

(단위 : 명, %)

질문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을 위해	22 (2.6%)	31 (3.6%)	158 (18.4%)	328 (38.3%)	318 (37.1%)	4.04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8 (5.7%)	65 (7.7%)	248 (29.2%)	293 (34.6%)	194 (22.9%)	3.61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69 (8.1%)	154 (18.0%)	241 (28.2%)	228 (26.7%)	163 (19.1%)	3.31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59 (6.9%)	141 (16.5%)	297 (34.8%)	239 (28.0%)	118 (13.8%)	3.25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② 아르바이트 목적 :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은 3학년(3.37), 2학년(3.28), 1학년(3.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3.41), 남학생(3.21)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종합고(3.42), 마이스터고(3.39), 농업계열 특성화고(3.37), 상업계열 특성화고(3.35), 공업계열 특성화고(3.09)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1.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 년	재학생 1학년	26 (11.0%)	37 (15.6%)	69 (29.1%)	62 (26.2%)	43 (18.1%)	237 (100.0%)	3.24
	재학생 2학년	23 (8.0%)	53 (18.4%)	82 (28.5%)	80 (27.8%)	50 (17.4%)	288 (100.0%)	3.28
	재학생 3학년	20 (6.1%)	64 (19.5%)	89 (27.1%)	86 (26.1%)	70 (21.3%)	329 (100.0%)	3.37
성 별	남	46 (10.4%)	74 (16.8%)	143 (32.4%)	99 (22.4%)	79 (17.9%)	441 (100.0%)	3.21
	여	23 (5.6%)	80 (19.4%)	97 (23.5%)	129 (31.2%)	84 (20.3%)	413 (100.0%)	3.41
학 교 유 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21 (11.7%)	30 (16.7%)	64 (35.6%)	41 (22.8%)	24 (13.3%)	180 (100.0%)	3.09
	상업계열 특성화고	34 (7.7%)	72 (16.4%)	124 (28.2%)	123 (28.0%)	86 (19.6%)	439 (100.0%)	3.35
	농업계열 특성화고	8 (7.7%)	17 (16.3%)	30 (28.8%)	27 (26.0%)	22 (21.2%)	104 (100.0%)	3.37
	마이스터고	6 (5.7%)	27 (25.7%)	18 (17.1%)	28 (26.7%)	26 (24.8%)	105 (100.0%)	3.39
	종합고	0 (0%)	8 (30.8%)	4 (15.4%)	9 (34.6%)	5 (19.2%)	26 (100.0%)	3.42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③ 아르바이트 목적 :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을 위해”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은 재학생 2학년(4.06), 1학년(4.03), 3학년(4.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4.15), 남자(3.93)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종합고(4.26), 마이스터고(4.20), 공업계열 특성화고(4.15), 농업계열 특성화고(4.04), 상업계열 특성화고(4.0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2.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을 위해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 년	재학생 1학년	11 (4.6%)	6 (2.5%)	41 (17.2%)	86 (36.1%)	94 (39.5%)	238 (100.0%)	4.03
	재학생 2학년	6 (2.1%)	6 (2.1%)	56 (19.5%)	115 (40.1%)	104 (36.2%)	287 (100.0%)	4.06
	재학생 3학년	5 (1.5%)	19 (5.7%)	61 (18.4%)	126 (38.1%)	120 (36.3%)	331 (100.0%)	4.02
성 별	남	13 (2.9%)	24 (5.4%)	102 (23.0%)	147 (33.2%)	157 (35.4%)	443 (100.0%)	3.93
	여	9 (2.2%)	7 (1.7%)	56 (13.6%)	180 (43.6%)	161 (39.0%)	413 (100.0%)	4.15
학 교 유 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9 (2.2%)	7 (1.7%)	56 (13.6%)	180 (43.6%)	161 (39.0%)	413 (100.0%)	4.15
	상업계열 특성화고	14 (3.2%)	16 (3.6%)	75 (17.0%)	172 (39.1%)	163 (37.0%)	440 (100.0%)	4.03
	농업계열 특성화고	3 (2.9%)	1 (1.0%)	23 (22.1%)	38 (36.5%)	39 (37.5%)	104 (100.0%)	4.04
	마이스터고	2 (1.9%)	5 (4.9%)	8 (7.8%)	43 (41.7%)	45 (43.7%)	103 (100.0%)	4.20
	종합고	0 (0%)	0 (0%)	4 (15.4%)	11 (42.3%)	11 (42.3%)	26 (100.0%)	4.26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④ 아르바이트 목적 :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은 재학생 2학년(3.28), 1학년(3.24), 3학년(3.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3.25)와 남자(3.25)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농업계열 특성화고(3.39), 상업계열 특성화고(3.28), 마이스터고(3.28) 공업계열 특성화고(3.23), 종합고(3.19)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3.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 년	재학생 1학년	23 (9.7%)	32 (13.4%)	82 (34.5%)	67 (28.2%)	34 (14.3%)	238 (100.0%)	3.24
	재학생 2학년	18 (6.3%)	47 (16.4%)	98 (34.3%)	84 (29.4%)	39 (13.6%)	286 (100.0%)	3.28
	재학생 3학년	18 (5.5%)	62 (18.8%)	116 (35.3%)	88 (26.7%)	45 (13.7%)	329 (100.0%)	3.24
성 별	남	32 (7.3%)	70 (15.9%)	158 (35.8%)	118 (26.8%)	63 (14.3%)	441 (100.0%)	3.25
	여	27 (6.6%)	71 (17.2%)	138 (33.5%)	121 (29.4%)	55 (13.3%)	412 (100.0%)	3.25
학 교 유 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9 (5.0%)	27 (15.0%)	77 (42.8%)	48 (26.7%)	19 (10.6%)	180 (100.0%)	3.23
	상업계열 특성화고	30 (6.8%)	78 (17.8%)	150 (34.2%)	124 (28.2%)	57 (13.0%)	439 (100.0%)	3.28
	농업계열 특성화고	8 (7.7%)	13 (12.5%)	34 (32.7%)	28 (26.9%)	21 (20.2%)	104 (100.0%)	3.39
	마이스터고	12 (11.5%)	15 (14.4%)	28 (26.9%)	30 (28.8%)	19 (18.3%)	104 (100.0%)	3.28
	종합고	0 (0%)	8 (30.8%)	7 (26.9%)	9 (34.6%)	2 (7.7%)	26 (100.0%)	3.19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⑤ 아르바이트 목적 :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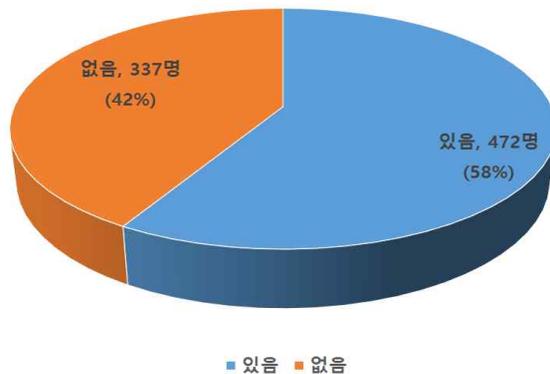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대한 견해								
4.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학년	재학생 1학년	20 (8.5%)	20 (8.5%)	65 (27.7%)	80 (34.0%)	50 (21.3%)	235 (100.0%)	3.51
	재학생 2학년	19 (6.7%)	25 (8.8%)	81 (28.5%)	100 (35.2%)	59 (20.8%)	284 (100.0%)	3.55
	재학생 3학년	9 (2.7%)	20 (6.1%)	102 (31.1%)	112 (34.1%)	85 (25.9%)	328 (100.0%)	3.74
성별	남	32 (7.4%)	30 (6.9%)	147 (33.9%)	137 (31.6%)	88 (20.3%)	434 (100.0%)	3.50
	여	16 (3.9%)	35 (8.5%)	101 (24.5%)	155 (37.5%)	106 (25.7%)	413 (100.0%)	3.73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12 (6.8%)	14 (7.9%)	66 (37.3%)	56 (31.6%)	29 (16.4%)	177 (100.0%)	3.43
	상업계열 특성화고	25 (5.7%)	33 (7.6%)	119 (27.2%)	157 (35.9%)	103 (23.6%)	437 (100.0%)	3.64
	농업계열 특성화고	5 (4.8%)	3 (2.9%)	32 (30.8%)	35 (33.7%)	29 (27.9%)	104 (100.0%)	3.77
	마이스터고	6 (5.8%)	14 (13.6%)	22 (21.4%)	31 (30.1%)	30 (29.1%)	103 (100.0%)	3.63
	종합고	0 (0%)	1 (3.8%)	9 (34.6%)	13 (50.0%)	3 (11.5%)	26 (100.0%)	3.69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매우 중요함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은 3학년(3.74), 2학년(3.55), 1학년(3.5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3.73), 남자(3.50)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농업계열 특성화고(3.77), 종합고(3.69), 상업계열 특성화고(3.64), 마이스터고(3.63) 공업계열 특성화고(3.43) 순으로 나타났다.

(10) 아르바이트 중 별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의 유무

아르바이트 중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는 472명(58%)에 불과했으며, 없는 경우는 337명(4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노동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아르바이트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응답자가 7.7%(50명)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아르바이트의 목적

(11)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현재 혹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총 648명이었으며, 최대 15시간(1명)부터 최소 1시간(3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한 인원 중 91명(14.1%)이 평균 4시간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응답자도 64명(1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한 인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9분이었다.

(12)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의 주당 평균 근무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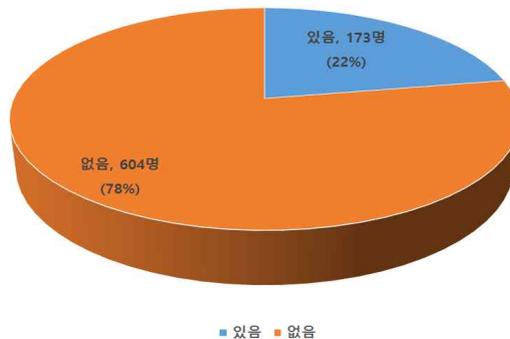
해당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611명이었다. 매일 근무하는 응답자는 28명(4%)이었으며, 주당 2일 근무를 하는 응답자가 301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13) 22시 이후 근무 경험

현재 혹은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22시 이후에 근무한 경험의 유무는 “있음”이 173명(22%), “없음”이 604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사항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알바 사업장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음을 나타낸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 노동(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 노동 금지되어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근무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건강권의 문제와 연계된다. 암과 관련된 직업병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순위 요인 중에 야간근무는 2A급으로 높게 분류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발암요인에 노출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모회사에서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도 그 회사에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현장실습을 하고 취직해서 계속 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 5명중 1명이 야간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의 건강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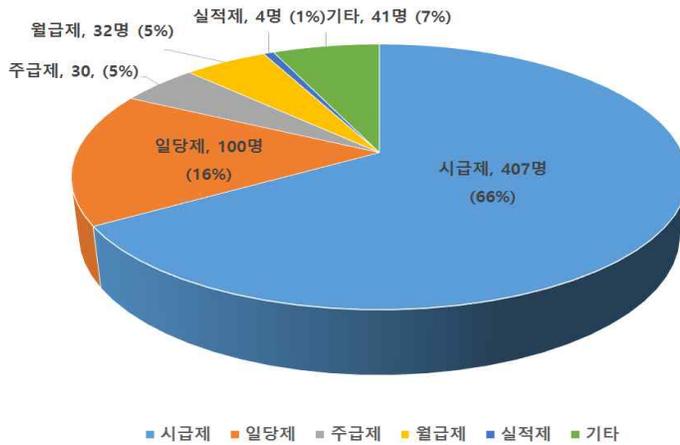


[그림 6] 22시 이후 근무 경험

(14) 급여 형태와 급여 금액

급여 형태는 시급제가 407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당제가 100명(16%), 월급제가 32명(5%)으로 뒤를 이었음. 실적제는 4명(1%)으로 가장 적었다.

시급제의 평균값은 약 6,216원이었으며, 이 중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미달하는 응답자는 35명(8.6%)이나 되었다. 일당제의 평균값은 약 55,915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급제의 평균값은 약 121,4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월급제의 경우 평균급여는 551,336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제의 급여액은 22,3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급여 형태와 급여 금액

(15)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경험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많은 경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3.3%(430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노동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근거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작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례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퇴근을 요구받은 경우”는 20.2%(163명)이 경험하였다. 일명 “꺾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대표적

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항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 이라서 “꺼기” 를 해도 현재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법률상 없다. 따라서 “꺼기” 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개선이 요구된다.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16.9%(136명)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는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된다.

15.6%(126명)은 126명(15.6%)은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급여를 계약사항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우” 도 14.1%(114명)이나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관련 질병을 앓은 경우도 14.1%(113명)이나 되었다. 이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노동에 종사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알바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청소년이 13.4%(108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13.4%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주40시간의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강요받은 응답자도 11.7%(94명)에 이르렀다. 청소년의 나이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는 청소년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 업주나 상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겪은 응답자는 8.7%(71명),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도 8.7%(70명)이 있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사업장에서의 직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 모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인간적 모독을 당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산과정 중 차액이나 손실, 분실물에 대해 직접 메운 경우는 8.3%(67명),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5.7%(45명)이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강제 구매한 경우도 4.1%(33명)이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적이 있다” 는 비율

이 14.1%(11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환경이 건강과 안정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설문을 통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가장 기초적인 근로계약서를 53.3%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기퇴근(꺼기), 주휴수당 문제, 임금 부분 미지급,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불,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위반비율이 44.1%에 달하고 있다. 거의 절반의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53.3%)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경험

(단위 : 명, %)

순번	질문	예	아니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30 (53.3%)	377 (46.7%)
2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163 (20.2%)	642 (79.8%)
3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36 (16.9%)	667 (83.1%)
4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126 (15.6%)	680 (84.4%)
5	급여를 (계약했던 것 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았다.	114 (14.1%)	697 (85.9%)
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113 (14.1%)	689 (85.9%)
7	수습사원(3개월)이라며 임금을 최저임금(2015년 5,580원/2016년 6,030원) 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08 (13.4%)	694 (86.6%)
8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94 (11.7%)	708 (88.3%)
9	업주나 상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	71 (8.7%)	732 (91.3%)
10	업주나 상사에게 폭행, 폭언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	70 (8.7%)	733 (91.3%)
11	정산과정 차액이나 손실, 분실물에 대해 직접 메운 적이 있다.	67 (8.3%)	738 (91.7%)
12	1주 15시간을 넘겨 1년 이상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45 (5.7%)	751 (94.3%)
13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작업복 등을 특정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33 (4.1%)	768 (95.9%)

(16)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해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3.60으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알바, 현장실습에서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는 노동자의 인권이 자유, 평등, 존엄 등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가 3.29로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노동과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3.26, “학교는 업무 중 부당 대우(성희롱, 임금체불 등)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3.23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학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3.23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을 종합하면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정도와 효율성은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가르치는 정도”가 3.23인데 비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3.60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노동인권교육이 보통 이상으로 가르치고는 있지만 향후 더 많이 노동인권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33] 노동 인권교육 견해

(단위 : 명, %)

질문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가중 평균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해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 (3.1%)	56 (4.2%)	555 (41.5%)	430 (32.2%)	255 (19.1%)	3.60
학교는 노동자의 인권이 자유, 평등, 존엄 등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74 (5.5%)	135 (10.1%)	609 (45.6%)	365 (27.3%)	154 (11.5%)	3.29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노동과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76 (5.7%)	136 (10.2%)	627 (46.9%)	352 (26.3%)	146 (10.9%)	3.26
학교는 업무 중 부당 대우(성희롱, 임금체불 등)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84 (6.3%)	177 (13.2%)	574 (42.9%)	349 (26.1%)	153 (11.4%)	3.23
학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75 (5.6%)	172 (12.9%)	607 (45.4%)	333 (24.9%)	150 (11.2%)	3.23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2. 심층 인터뷰 조사

1) 조사 개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개별 노동인권 침해 내용을 조사하고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 4일 충남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 관계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5명, 특성화고 재학생 3명을 초청하여, ①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알바 현장의 실태와 구체적인 노동인권침해 사항, ②현직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 ③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교사들의 제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침해 사례

(1) 불법 연장근무 실시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심지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 선배나 불량학생에게 협박을 받아 원치 않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장 실습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 대상 블랙리스트가 있고 부당한 조치를 당한 학생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귀교를 조치하고 있으나, 위계에 의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2) 연장근무 추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평일에는 보통 최소 4시간, 보통 6~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수당은 경력에 따라

최저시급에 약간 수당을 더하여 받았지만, 청소년이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 하루 12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해치는 사안이다.

서류상으로는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편법적으로 추가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추가 근로가 어렵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편법적으로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차별 문제

근로기준법 제6조는 노동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응답자들은 학벌로 인한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졸취업자,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차별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지급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작은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시골의 식당,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5) 인격적 모독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닌 폭언도 포함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및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학생들이 조기에 귀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 상사로부터 인간적인 모독을 당하는 경우이었다. 현장실습생은 일어 어려워서 그만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모독 때문에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열등감이 있는데, 현장실습이나 알바 사업장에서 “여기서 뭘 바라보고 일하니? 차라리 대학이나 가!” 등의 자격지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직장내 상사의 기분이 나쁠 때에는 화풀이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

(6) 위계에 의한 원치 않는 근무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선배나 불량학생에게 협박강권에 의해 원치 않게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선배들의 강압에 의한 특배승하차 알바의 경우이다. 일부 학생들은 밤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택배 알바를 하고 있다. 밤에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밤새 택배일을 하고, 새벽 5시에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와서 등교하여 학교에서는 옹드려 자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택시비는 일당에서 공제된다.

(7) 부당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급을 적게 받아 항의하자 다음날 해고를 당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식당에서는 주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다음날 해고되었다. 청소년들이 휴식시간,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시골의 경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느 식당에서 해고당하면 인근 다른 식당에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 휴식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심지어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9) 인권침해 사항 신고 미비

근로계약서 작성, 가산수당 등을 학교에서 교육받아 알고 있으나, 어리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였다. 알바가 끝나고 나서도 급여기록만 있으면 사후에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다.

(10) 청소년 불법 노동으로 인한 인권사각지대

음식점에서는 법으로 학생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실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음식점에서 술을 나르는 심부름을 할 수 없지만, 주인의 요구에 의해 술심부름도 하고 있다.

퇴폐 노래방에서 근무한 학생이 폭행당한 경우도 있다. 이 학생의 경우 불법업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학교에 알리기도 싫어 하였다. 이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 사각지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문제가 심각하다.

특별고용의 형태, 예컨대 “배달의 민족” 등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단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알바업종 18%가 기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알바를 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그들의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3) 현장실습 문제점

(1) 변형된 취지

직업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실시되는데, 취업인지 현장실습인지 모호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값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학생을 현장실습에 보내는 것은 정부의 취업률 제고 정책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실제로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교육목적사업을 위한 교육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고 있다.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는 노동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업실습을 하는 교육적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취업률로 계상되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 알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취업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게을리한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3학년2학기 때 현장실습을 나가기도 하고,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과는 다른 알바, 식당 등으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의 계열에 따라 현장실습의 유용성이 달리 나타났다. 공업계열의 경우 전공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가는 비율이 30~35% 정도로 높았으며, 현장실습이 졸업 이후 취업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상업계열, 농업계열, 종합고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형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최저 임금만 주면 되는 청소년들이 사업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심지어 노사쟁의가 이루어지는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대체인력을 현장실습을 활용하는 나쁜 경우도 있다.

(2)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사업장

학교에서 실습을 보내는 것의 목적과 현장에서의 현실 간 괴리감이 심하다. 공업계열의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실습은 약 30%에 불과하고,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현장실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음식점, 상점에서 실습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전공교육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이 전공 관련 실습이외에 직장경험이라는 부수적 체험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인권의 시각에서 볼 때 학생신분으로서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체에서 체험하는 노동경험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4) 노동 인권 교육 문제점

(1) 특강 형식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집중도 저하

노동 인권 교육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을 충분히 해주는 것 같지만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체의 몰인식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련 법조항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소규모 음식점(24.8%)에서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법적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적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조그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시, 편견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이에 따라 당연한 자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어른이고 혹은 주인이 동네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정인식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의 기업주, 상사의 노동인권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궁극적으로 개선되기 힘들다.

제 4장 정책제언

2013년부터 청소년들이 주로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 행위를 다수 경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3년부터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 고용부, 여가부,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종합대책에는 ①사업장 감독(감독사업장 확대, 연중 상시 감독, 관계부처 합동점검 강화, 감독 내실화), ②신고체계 구축(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모바일 앱 개설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운영,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신설 및 청소년 리더 활동 강화, 신고센터 확충), ③인식개선(사업주 및 청소년교육 내실화, 성피해 예방활동 강화, 학교의 역할 강화, 사업장 자율개선 및 홍보 강화), ④인프라 확충(관계부처 합동 근로환경 정기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범정부 TF 운영, 민관합동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발생은 크게 법률적 차원의 문제, 인식적 차원의 문제,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결국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 인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인권침해를 허용할 수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률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해도 지역적 차원, 인간적 친분 등으로 인해 묵인하에 법률적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법률적 제도를 모르고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인식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제도적 차원은 준법과 노동인식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노동인권을 무시하게 되거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과 사후 감독 등을 의미한다. 이런 세 차원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청소년 노동인권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가지 차원의 보완책을 대상영역별로 제시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사항

① 근로계약서 작성 인식 강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자 혹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청 차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방안은 후술할 것이며, 홍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주요 도로 게시판 등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벌금을 받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할 때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개인사업주들의 경우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충남도청도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전담기구(센터) 설치

청소년들은 알바과정에서 부당·불법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기업체에 나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업체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부당·불법 사례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받을 불이익과 취업률 때문에 학생들을 설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의 특성, 특성화고의 경우 특성화고가 갖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이 비인격적,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개소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의 청소년은 그나마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선생님들을 통해 부당·불법대우에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

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온전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를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요구된다. 전담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총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 지원, 현장실습 정상화 지원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³⁾

전담기구는 충남도청과 교육청이 협조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학교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도청에 있다. 현장실습의 노동인권은 교육청이 하고, 청소년 노동은 도청에서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도모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의하면 도청과 교육청의 공동의 책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취업관련 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청, 도청 차원에서 이러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③ 근로기준법 제70조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야간 노동(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단 당사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해서도 안 되고 노동부장관의 인허가권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는 ‘근로를 안 하는 시간에도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본 조사를 통해서 20.2%의 청소년들이

3)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2015)

일명 “임금 꺾기” 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꺾기” 를 해도 현재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법률상 없다. 청소년 대상 임금꺾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현장실습 개선사항

① 취업률 중심의 특성화고 평가를 개선

현장실습을 본래 취지의 현장 교육적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률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의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취업률을 반영해서 교육청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고 있다. 현재는 부당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체에 학교 선생님이 가서 조사를 하여도, 학생을 복교 조치하면 취업률이 떨어지므로, 학생에게 참을 것을 권하는 실정이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평가기준으로 교육청 사업예산을 배분하더라도, 충남 교육청이 특성화고에 사업예산을 배분할 때 취업률 기준의 비중을 낮추어서 적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평가기준이 때에 따라 진학률, 취업률 등 변하기 때문에, 충남 교육청도 평가기준인 취업률의 적용을 낮출 수 있다.

②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및 사용 의무화

현재 현장실습을 나갈 때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와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 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⁴⁾

4)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2015)

③ 부당·위법사업장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의 근거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병역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을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현장실습의 경우 부당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도청, 센터 전문가, 학교 선생님, 노동부 감독관이 공동으로 해당 산업체를 조사점검하고 고소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동 인권 교육 개선사항

① 노동인권교육 형식 변화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 인권 교육은 주로 특강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진로와 지도” 교과목의 부분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은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때부터 “노동”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례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업체의 노동인식 개선 교육

피해자인 청소년의 노동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가해자인 사업체에

5)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2015)

대한 노동인식 개선이다.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학생들의 권리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사업체의 인권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현장실습생이 실습하는 기업체와 개인사업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생은 기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되는데 반하여, 개인사업자(예,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하다. 식당 등 개인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안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기본적 노동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③ 교사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교사들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시책연수교육에 청소년 노동인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일반학교 확대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특성화고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학교에도 확대해야 한다. 교육방식도 특성화고에 준하는 개선방안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현장실습 과정을 포함한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선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인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부당·불법사항을 담당 선생님과 동료·후배학생들의 들은 이야기를 간접화법으로 인용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주로 현장실습과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본 연구가 충남 지역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농·어촌 청소년의 노동실태도 반영되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으나, 많은 응답 대상 청소년이 도시화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따로 연구할 필요도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충남지역 전체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처음이기에 본 조사결과를 통해 어떤 인권사항이 개선되었고, 또 어떤 인권사항이 새로운 과제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혹은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충남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조항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률을 모르거나 귀찮음을 이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교차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벌금을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바하는 지역 식당에 “우리 식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내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 노동인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적 기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법률개정도 요구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청소년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제4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에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취업률로 특성화고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특성화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의 적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 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당위법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교육을 통해 “노동”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청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필수교육인 위생교육 안에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시책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 조사
- 박창남(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권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이수정·이주환(2015),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 방향, 『노동사회』, 182권 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아름(2010),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4권 0호, 한국
청소년문화연구소.
- 정진후(2013),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 차남호(2015),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이야기』, 철수와 영화.
- 최민(2015), 2015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연구보고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최수정(20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정진후,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료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1), 천안시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2), 천안시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3), 천안시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4), 천안시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5),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제안서
- 충청남도(2015), 충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참고자료 1. 해외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해외에서는 인턴 혹은 현장실습을 활용하는 기준을 정하여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노동부는 공정노동기준법을 통해 인턴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무급인턴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⁶⁾

- 인턴업무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지만, 교육적 목적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적 성격이 있어야 함
- 인턴업무에서 체험하는 경험이 인턴에게 이익이 되어야 함
- 인턴은 정규 근로자와 대체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직원에 의한 밀착된 감독(일시적으로 특정시점에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턴 사용불가)
- 훈련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인턴활동으로부터 즉각적인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업무가 인턴교육으로 지체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함
- 인턴은 필수적으로 인턴십의 결과로서 채용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사용자와 인턴은 인턴기간 동안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
- (추가) 인턴십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인턴십이 사용자가 채용을 위해 사용하는 기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

2) 프랑스

프랑스는 Cherpion법을 통해서 현장실습, 인턴의 고유목적은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Cherpion법은 사용자~실습생~교육기관간의 계약서명을 의무화하고 있고, 1년에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인턴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인턴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습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인턴을 채용할 때에는 인턴십 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⁷⁾

6) 노동부(2016),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7) 노동부(2016),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3) 독일

독일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실습생, 인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직업교육법이나, 근로시간법, 청소년근로보호법 등을 개별 법령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용기간, 주당 근로시간, 과업내용, 기대혜택, 보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실습생과 근로자와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나, 인턴 계약서에 교육적 목적 이외에 노동성과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기회 제공의 비중이 더 높으므로 인턴으로 간주된다.⁸⁾

독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노동인권 캠페인사업이 있다. Larriere 잡지가 주도하는 Fair Company Initiative에는 2011년까지 150여개 회사가 서명하여 시행하고 있다. Fair Company Initiative는 정규직 자리를 인턴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 인턴에게 정규직의 일을 부여하지 않을 것, 인턴에게 향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인턴이 자신의 직업 전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인턴에게 적절한 비용을 제공할 것 등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캠페인이다. 독일에는 2015년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인턴에게도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단 직업훈련생, 학과실습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인턴십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⁹⁾

4) 일본

일본에서는 무급인턴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법령은 없다. 단 노동기준법상 체험이나 견학 목적을 벗어나 인턴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 관련법(남녀고용기회균등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재보험법, 직업안정법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턴제를 대학 교육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는 무급 인턴원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형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¹⁰⁾

8) 노동부(2016),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9) 노동부(2016),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10) 노동부(2016),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참고자료 2. 설문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충청남도청의 유관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본 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의 노동실태와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충남연구원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http://www.cni.re.kr>

주관·수행기관 : 충남연구원

담당자 :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041)840-1270

김문광 초빙연구위원 (041)640-7437

※ 다음 각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 √표를 해주시고, 일부 문항 중에는 간략하게 기입하는 경우(기타 란)도 있습니다.

『충남지역 청소년(특성학교 재학생) 노동 및 노동인권 교육 설문 조사』

□ 인적사항

학 년	() 학년
성 별	① 남 ② 여
학 교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공업계열 특성학교 ② 상업계열 특성학교 ③ 농업계열 특성학교 ④ 마이스터고 ⑤ 종합고 ⑥ 기타 ()
거주지 (주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아래에서 선택해 주시고, 동/읍/면은 직접 적어 주세요. ① 공주시 ② 천안시 ③ 청양군 ④ 홍성군 ⑤ 논산시 ⑥ 예산군 ⑦ 계룡시 ⑧ 태안군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보령시 ⑫ 서천군 ⑬ 아산시 ⑭ 서산시 ⑮ 당진시 기타()
	() 동/읍/면

□ 노동 감수성 및 노동에 대한 의식

1. 노동과 직업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서 귀하의 견해를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노동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면과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3D업종(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남들이 보기 창피해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 보수가 적더라도 종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적인 직장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자아실현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명예를 얻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기타()

3. 일·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적성에 맞을 것	①	②	③	④	⑤
일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보상(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	①	②	③	④	⑤
재미있을 것	①	②	③	④	⑤
장래성	①	②	③	④	⑤
사내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기타 ()

4. ‘노동자’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 | | |
|-----------------|-------------------|
| 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 ②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
| ③ 불쌍하다. | ④ 나는 되고 싶지 않다. |
| ⑤ 가난하다. | ⑥ 과격하다. |
| ⑦ 무식하다. | ⑧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
| ⑨ 자랑스럽다. | ⑩ 관심 없다. |
| ⑪ 기타 () | |

□ 노동인권교육 현황

12.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학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는 업무 중 부당 대우(성희롱, 임금체불 등)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는 노동자의 인권이 자유, 평등, 존엄 등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노동과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해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전략연구2016-25 ·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연구

글쓴이 · 성태규, 장창석, 김문광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70(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72-8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